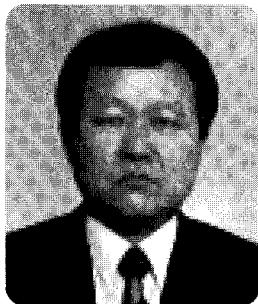


전자출원 시대의 개막에 따른 포괄위임장 제도(1)



송재기
<특허청 정보기획과장>

I. 서 론

1. 의 의

개별위임장 제도는 위임장에 위임하는 특정사건을 명시하여야 하며, 매 출원 건마다 위임장을 첨부하고, 위임장 내용이 동일할 경우에는 원용한다는 취지를 명기하고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출원인의 부담이 발생하였고 온라인에 의한 전자출원에는 증명서의 서면제출은 전자출원 개념에 맞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위임장에 특정사건을 명시하지 않고, 1장의 포괄위임장으로 현재는 물론 장래의 여러 사건에 대해 포괄위임장에 기재된 대리인이 특허청에 절차를 행하도록 할 수 있게 하는 포괄위임장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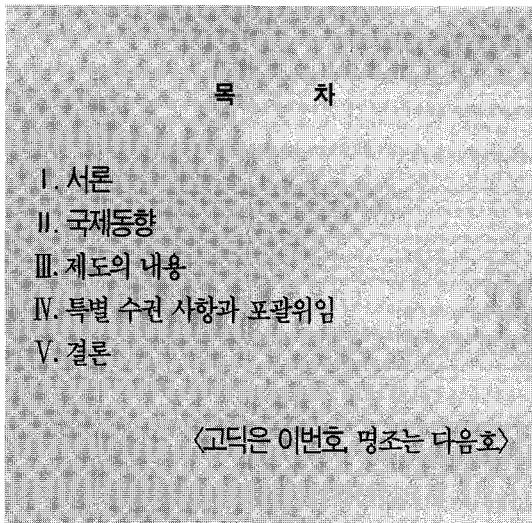
즉, 온라인에 의한 전자출원에는 증명서 및 증빙자료 등 물건의 제출이 불가능하므로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써 장래 개개의 출원 건마다 제출하던 개별위임장을 출원과 동시에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미리 사건을 특정하지 않고 대리권을 수여한 포괄위임장을 청에 등록하여 두고 매 출원마다 그 포괄위임장을 특정(청에서 부여한 포괄위임 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것에 의해 그 포괄위임장에 기재된 대리인이 특허청에 절차를 행할 수 있도록

목 차

- I. 서론
- II. 국제동향
- III. 제도의 내용
- IV. 특별 수권 사항과 포괄위임
- V. 결론

〈고딕은 이번호, 폰조는 다음호〉



한 것이다.

본 보고서는 포괄위임장에 대한 민원인들의 이해를 듣고, 시행 초기에 있는 이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도입 효과

(1) 민원인 편의 도모

현재의 출원 건마다 위임장을 제출하던 것을 포괄위임장으로 대체가능하기 때문에 장래의 여러 사건의 절차에 있어서 위임장제출의 생략이 가능하다. 전자 출원 제도하에서 개별위임장을 고수할 경우 타 출원서류는 On-line에 의한 제출이 가능하나, 위임장만은 별도로 매 출원시마다 원본을 제출해야한다는 문제가 발생된다.

포괄위임장제도는 현행의 개별위임장에 비해 출원인들의 출원에 따른 번잡함과 소요비용 및 소요시간을 경감시켜 출원인의 편의를 도모해 줄 수 있는 제도이다.

(2) 청내 업무처리의 효율화

매 출원 시마다 행하는 위임장 확인대신 위임사항의 자동 방식심사가 가능하므로 소요되는 인력 및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종이서류 관리가 불필요함으로써 청내 업무처리의 효율화를 꾀할 수 있다.

포괄위임장의 확인절차가 전산화되면, 출원시 포괄위임장을 원용할 경우 당해 심사관이 기제출된 포괄위임장의 원본 확인에 소요되는 시간은 대폭 단축이 가능할 것이다.

(3) 향후 국제 협약에의 가입

주요 선진국들이 포괄위임장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가 가입을 검토중인 상표법통일화 조약과 마드리드의정서에서는 포괄위임장의 채택을 회원국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동조약들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포괄위임장제도의 도입이 전제조건이다.

현재 논의중인 특허법통일화 조약 등에서도 포괄위임장제도의 규정이 논의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이번에 포괄 위임장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이를 조약에의 가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II. 국제 동향

1. 외국의 포괄위임장 채택 현황

위임장제도는 미국, 일본, 프랑스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영국, 독일의 경우는 위임장 제출을 반드시 요구하지는 않지만, 특허청 또는 제3자가 대리권의 증명을 요구하면 위임장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위임장에 특정사건을 명시하지 않고, 1장의 포괄위임장으로 현재는 물론 장래의 여러 사건에 대해 포괄위임장에 기재된 대리인이 특허청에 절차를 행하도록 할 수 있게 하는 포괄위임장제도는 일본, EPO, 독일이 채택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은 특허, 실용신안의 경우만 포괄위임장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프랑스는 포괄위임장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2. 포괄위임장을 규정하고 있는 국제 협약

① 상표법 통일화 조약: Trademark Law Treaty

위임장은 위임장에 명시된 하나 또는 2이상의 출원 및 등록과 관련되거나, 또는 위임자가 표시하는 예외를 제외하고, 위임자의 현재와 장래의 모든 출원 및 등록과 관련될 수 있다.(제4조 3항 6호)

② 특허협력조약: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출원에 대한 대리인의 선임을 출원인이 할 수 있는 어떠한 출원에 대하여도 출원인을 대리할 대리인을 선임하는 별개의 위임장(포괄위임장)이 있는 취지를 출원서 또는 별개의 통지에 표시함으로써 행한다.(제 90조의 5, A)

③ 마드리드 의정서: Madrid Protocol

출원인이나 권리자는 국제사무국에 포괄위임장을 제출할 수 있다. 포괄위임장은 출원인이나 권리자가 출원자의 현재와 장래의 모든 출원 및 등록에 대해 국제사무국에 대리인으로 지명하는 것이다. (제 4조 3항 2호)

④ EU 공동체 상표법

위임자의 모든 상표거래에 대해 대리행위를 할 수 있는 포괄위임장이 제출될 수 있다. (시행령 제 64조 2항)

3. 일본의 포괄위임장 제도

(1) 개요

일본은 1990년. 12. 1을 전자출원을 도입하면서 포괄위임장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는 특허법 등의 개정을 통하여 않고 “공업소유권에 관한 절차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여 전자출원 시행에 관한 제반규정의 일부로 규정함으로써 이루어졌다. 일본의 포괄위임장제도는 전자출원이

실시되는 특허와 실용신안권 등록출원에 대해서만 시행하고 상표 및 의장의 등록출원과 모든 이의신청 및 심판의 청구는 적용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사정계 심판에서는 이를 유추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PCT 출원에서는 일본을 수리관청으로 하여 출원하는 PCT 국제출원만 포괄위임장을 인정하며, 일본을 지정관청으로 하여 출원하는 PCT 국제출원에서는 이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2) 도입 배경

온라인 출원시에는 증명서의 전송이 불가능하므로 개별위임장을 출원과 동시에 별도로 제출해야 하거나, 온라인 출원 후 보정을 통해서라도 개별 위임장의 제출이 필요하며, 이러한 번잡성을 피하기 위해 포괄위임장제도를 도입하였다.

(3) 포괄위임장의 제출 방법

포괄위임장은 “포괄위임장 제출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포괄위임장은 예시된 양식(특례법 시행규칙 양식 6)의 이용이 가능하나, 타양식도 사용이 가능하다. 예시된 양식 중 위임사항의 추가 또는 일부 제한도 가능하며, 특별수권 사항은 위임사항 기재 시에만 대리권의 범위에 속한다.

하나의 포괄위임장에 4권을 동시에 위임사항의 기재가 가능하지만, 현재는 특허와 실용신안에 대해서만 적용이 가능하다. 위임자 또는 대리인 모두가 제출할 수 있으며, 하나의 포괄위임장에 복수의 대리인 기재도 가능하다.

(4) 포괄위임장의 등록 및 활용

위임자 또는 대리인이 포괄위임장제출서와 포괄위임장을 제출하면 청에서 방식심사를 거쳐 수리 후 포괄위임장과 그 내용을 등록한다. 포괄위임장

이 등록되면, 제출자에게는 10자리의 포괄위임장 번호와 대리인명을 통지한다. 향후 대리인이 대리 행위시 각종 서류의 『제출물건의 목록』의 『포괄 위임장 번호』란에 그 대리인에 대한 포괄위임장 번호를 기재하고, 번호의 기재로 대리권의 존재를 주장한다. 포괄위임장은 서면, FD, 온라인 출원 모두에서 가능하다.

(5) 포괄위임등록내용의 수정

동일한 대리인에 대하여 위임사항을 바꾸거나, 복수의 대리인의 조합을 바꾸어 복수의 포괄위임장을 제출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기제출된 포괄위임장을 취하하고 새로운 포괄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이는 포괄위임장 제출 후 출원인의 주소, 인감변경 시에도 유효하나 별도의 변경신고가 필요하다.

포괄위임된 사건중 특정 1건에 대해 위임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임사항이 다른 개별위임장을 이용할 수 있다.

(6) 포괄위임의 원용제한과 취하

포괄위임장 원용제한 신고(특례법 시행규칙 양식 7)을 제출함으로써, 특정의 개별사건에 대하여 포괄위임장의 원용제한이 가능하다.

포괄위임장의 취하는 “포괄위임장취하서” 서면으로 제출하여, 그 후의 출원위임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취하서 제출 전에 이루어진 포괄위임장에 근거한 개별수속에 대해서는 대리관계가 존재한다. 이 경우 대리관계 소멸을 원할 경우 개별 사건마다 대리인의 해임 혹은 사임신고서 제출이 필요하다. 포괄위임장을 취하지 않고, 개별사건에만 대리권을 소멸시키는 경우도 이와 동일하다.

〈일본과 우리의 실시 방법 비교〉

	우리의 실시 방법	일본의 실시방법
시행시기	전자출원시행시(1999.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된 포괄위임장의 원본을 모두 전산입력하고 고유번호 부여 - 원용시 포괄위임장의 고유번호를 출원서에 기재 - 위임장 확인은 단말기에서 고유번호를 확인 	좌동 (90. 12. 1 - 전자 출원 도입시)
시행규정방안	특허법의 관련규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허법의 시행규칙등 위임장 관련규정(서식 포함)을 포괄위임장의 제출이 가능토록 개정 	특허법등의 개정을 통하지 않고 “공업소유권에 관한 절차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
시행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괄위임장은 “포괄위임등록 신청서”的 첨부물로 제출 - 하나의 포괄위임장에 특허, 실용신안권, 상표권, 의장권을 동시에 위임사항 기재 가능 - 하나의 포괄위임장에 복수의 대리인 기재 가능 - 위임자 또는 대리인 모두가 제출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괄위임장은 “포괄위임장 제출서”的 첨부물로 제출 - 하나의 포괄위임장에 특허와 실용신안권을 동시에 위임사항 기재 가능 - 하나의 포괄위임장에 복수의 대리인 기재 가능 - 위임자 또는 대리인 모두가 제출 가능
시행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리의 출원, 등록 절차는 물론 사정계심판, PCT지정관청출원에 도입 - 이의신청, 당사자계심판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출원이 실시되는 특허와 실용신안권 등록 출원에 대해서만 시행 - 상표 및 의장의 등록출원과 모든 이의신청 및 심판의 청구는 적용대상이 아님